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9. 3.(목)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1차, 제42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3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최성준 위원장

- 국회에서 제3기 방통위 출범 이후 전체회의에 대한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38차 회의까지의 속기록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6일 제40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39차부터 제42차 회의 중 제41차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에 관한 건」의 속기록은 지난 2008년 8월 9일 의결된 「위원회 속기록 국회 제출 기준」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후보자의 성명,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 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44-196~19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 및 하나방송 주식회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매 익월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14년도 126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31억 7,978만원 중 2억 5,350만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29억 2,628만원 중 1억 5,785만원은 '14년 4월부터 '15년 3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하고, 27억 6,843만원은 '15년 4월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253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도 5월까지 123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11억 9,140만원 중 1,960만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11억 7,180만원 중 2,485만원은 '15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하고 11억 4,695만원은 '15년 7월 31일과 8월 7일에 나눠 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144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은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PP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14년도 164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34억 1,599만원 중 28억 7,655만 6,000원은 정상지급하였으나 '14년도 3월부터 4월분 프로그램 사용료인 나머지 5억 3,943만 4,000원을 '14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각각 한 달 가량 지연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32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 5월까지 160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13억 5,049만 3,000원은 정상지급했습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은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PP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14년도 141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23억 5,895만 2,000원 중 2억 3,638만 5,000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21억 2,256만 7,000원을 '14년 3월과 '14년 8월부터 '15년 3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하여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171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 5월까지 141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9억 5,175만 4,000원 중 3억 5,999만 5,000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5억 9,175만 9,000원을 '15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하여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43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방송 주식회사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매 익월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14년도 157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7억 7,607만 9,000원 중 3억 8,141만 6,000원만 정상지급하고 '14년 1월부터 10월분 프로그램 사용료인 나머지 3억 9,466만 3,000원을 '14년 4월부터 11월, '15년 1월에 걸쳐 각각 한 두 달 가량 지연지급하여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53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년 5월까지 153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2억 9,449만 5,000원 중 1억 1,767만 8,000원만 정상지급하고 '15년 1월부터 3월분 프로그램 사용료인 나머지 1억 7,681만 7,000원을 '15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각각 한 달 가량 지연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27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4개 SO는 '14년 1월부터 '15년 5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135억 1,894만 3,000원 중 79억 2,332만원을 지연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관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년 7월 9일 방통위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미지급·지연지급한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 및 (주)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 등 7개 SO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정명령 하였고, 나머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건의 조사 대상인 4개 SO 중 '14년도에 시정명령을 받은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및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은 '14년도 10월부터 12월 중에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반면 행정지도를 받은 하나방송 주식회사는 '15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15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 하나방송은 '14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하여 '14년 10월부터 '15년 1월 사이에 합의를 한 47개 채널에 대해서

는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미리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4개 SO 중 (주)씨제이헬로비전의 경우 시정명령 이전인 '14년 5월부터 6월에 지연지급 행위가 이루어진 반면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 및 하나방송 주식회사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에 반영한 이후에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 및 하나방송 주식회사는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14년 지연지급분에 해당하는 이자 1억 2,072만 2,000원을 '15년 4월에 일괄 지급하고 '15년 지연지급분에 해당하는 이자 1,760만 2,000원을 조사기간 중인 '15년 7월 31일과 '15년 8월 7일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은 이자 지급에 관한 계약 조항을 변경한 이후 '14년 11월부터 '15년 4월 지연지급분에 해당하는 이자 718만 8,000원을 조사기간 중인 '15년 9월 1일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방송 주식회사는 이자 지급에 관한 계약 조항을 변경한 이후 '15년 1월부터 3월 지연지급분에 해당하는 이자 25만 1,000원을 조사기간 중인 '15년 8월 27일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1호는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등 4개 SO가 PP로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방송수신료를 받으면서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불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와 지연이자를 PP에게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피심인 의견으로는 설비 투자, 경영난 등으로 인한 자금 운영상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의견, 또 지연지급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 또 프로그램 사용료 및 지연이자 지급이 모두 완료된 점, 이후 기한 내 정상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안)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등 4개 SO가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1호를 위반한 프로그램 사용료와 지연이자의 지연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8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과징금은 어느정도 부과가 가능한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가 가능하고,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에 비율을 곱하게 되어 있는데 '중대성 약함'은 0.6% 이하, '중대함' 0.6% 초과 1.2% 이하까지 곱할 수 있고, '매우 중대함'은 1.2% 초과 1.8%이하를 곱할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과징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의결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과징금의 액수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것은 나중에 피심인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별도로 사무처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별도로 보고하실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오늘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보고받은 안전에 대해서 논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개사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을 반영한 이후에도 이번 조사에서 지연지급 된 상황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주)씨제이헬로비전은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을 합병하면서 영서방송이 지연지급 한 것이 여기에 승계가 된 것이지요?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의견진술인 입장)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대표이사이신 유○○ 씨입니까?

○ 유○○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대표이사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진술 해 주십시오.

○ 유○○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대표이사

-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대표 유○○입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취임을 했고 올해 초부터 재허가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저희 회사가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개선하고자 자산 매각과 재무 개선을 통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미지급분 약 90억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잘 통감을 하고 있고,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이 한국의 콘텐츠 산업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절대 PP 수신료를 지연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대표이사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의견진술인 퇴장)

방송정책국장님, 그러면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건에는 시정조치(안)이 없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있습니다. 뒤에 별첨으로 붙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자회의 화면에는 없고 별도로 만든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아닙니다. 모두 별첨으로 붙어 있고,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보시기 편하게 옆에 놓아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내부적인 업무처리 문제인데, 해당 안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시정조치(안)입니다. <붙임>이 아닌 해당 안건에 시정조치 내용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전에 방송 쪽보다도 통신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보통 일반적인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쪽 나열하고, 맨 마지막에 피심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사무국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보고하는 절차이고, 안건 자체에 시정조치 내용이...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안쪽이에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문서 자체에는 시정조치 방안이 기재가 되어 있고, 시정조치 방안 전까지 먼저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후반부에 시정조치 방안을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서 자체에 시정조치 방안이 없고, 별첨으로 있다고 말씀하셔서, 형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해 주시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씨씨에스충북방송 4개 SO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에 대하여 방송정책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별표자료 시정조치 방안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 및 하나방송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씨제이헬로비전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우선 (주)씨씨에스충북방송과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의 경우 '14년 7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으로 인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하나방송 주식회사의 경우도 지연지급 금액이 다른 SO에 비해 적고, 지연기간이 한두 달 정도 짧기는 하지만 총 13개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씨제이헬로비전에 대해서는 '14년 7월에 있었던 방통위의 시정조치 이전인 '14년 3, 4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한 달씩 지연지급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명령 이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제재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명령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PP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방송으로 고지하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로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미지급·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17년 1월까지 매월말 전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는 방안입니다. 끝으로 각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조치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경우 이미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였더라도 적절한 수익배분 지연이라는 방송법령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프로그램 사용료가 PP의 주된 재원이라는 점, 건전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필수적 조정과 추가적 조정을 거쳐 관련서비스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방안입니다. 본 건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과징금 부과사례 등을 고려할 때 부과기준을 '중대함'과 '중대성 약함'으로 차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사업자별 부과기준을 적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씨씨에스충북방송과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금액'이 각각 40억 9,800만원과 27억 1,400만원으로 총 프로그램 사용료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지연지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 발생했다는 점, 과거 동일한 위반행위로 한 차례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중대함'으로 판단하되, 상대적으로 '지연지급 금액'이 많고, '지연지급 기간'이 장기인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0.9%를, 이에 비해 '지연지급 금액'이 적고, '지연지급 기간'이 짧은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은 0.7%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면 하나방송 주식회사는 '지연지급 금액'이 5억 7,100만원으로 다른 SO에 비해 적고, '지연지급 기간'도 한두 달 정도 짧으며,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중대성 약함'으로 0.1%를 적용함으로써 3개 SO간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필수적 조정과 관련하여 3개 SO 모두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므로 30%를 필수적으로 가중해야 합니다. 추가적 조정과 관련해서는 3개 SO 모두 조사협력으로 20% 감경, 조사 이후 자진 시정으로 20% 감경을 받아 총 40%의 감경이 적용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1억 3,265만원,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이 8,931만원, 하나방송 주식회사가 446만원으로 3개 SO 총 2억 2,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방송정책국의 시정조치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보고받은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정조치 방안을 본문에 포함해서 보고해야하는데, 별첨으로 되어 있어서 국 간에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방안은 별도로 보고한 적도 있고, 본문에 포함해서 보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최근에는 전부 본문에 포함해서 보고했습니다. 과거에는 별도로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페이지에 ‘(주)씨제이헬로비전’이 시정명령 이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씨제이헬로비전이나 하나방송 주식회사는 조사 이후에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조사기간 중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씨제이헬로비전 자체는 사실 작년 ‘14년도 7월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전에는 약간의 지연지급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년 7월 이후에는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4페이지에 필수적 조정에 있어서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로 30%를 가중한다고 되어 있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위반한 횟수가 얼마나에 따라 필수적 가중은 최대 30%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50%까지 필수적 가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횟수나 기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고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기 때문에 3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재량 없이 30%를 가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감경사유 <6>번에 ‘재발방지 조치 도입’이나 ‘기타’는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재발방지를 위해서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의견진술을 (주)씨제이헬로비전의 대표가 와서 했는데, 저는 사무처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참석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시정을 하고있고, 추후 위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진술을 듣다 보니까 <6>번이나 <7>번은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인지..., 저는 사무처에서 보고한 내용 외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은 재발방지 조치 도입으로 추가 감경할 사유가 있는지….

○ 이기주 상임위원

- 대표이사가 '앞으로 책임지고 재발방지 조치 도입을 하겠다.'고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야기한 것은,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도 받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시정조치 방안에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사용료가 PP의 주된 재원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가 제때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PP의 제작, 편성, 운영 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성방송, IPTV에는 위법행위가 없었고, 영세한 SO들에 한해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지연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PP들이 유료방송 운영의 핵심적인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들이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제재를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SO의 경우는 방송사업자가 비방송 분야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지행위 위반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 공공성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SO의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를 거치면서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분과 지급이자까지도 일시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수위에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고경영자께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징금의 수위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언급 안 한 부분,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기주 위원님이나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안 등을 감안해서,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0.9%,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은 0.7%, 하나방송 주식회사는 0.1%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여러 사안 등이 감안되어서 결정이 됐다고 보입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최고경영자께서 나오셔서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재발방지 조치 도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추가적으로 감경할 여지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도로써 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만..., 최고경영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도입이 됐다고 본다면 앞으로 다른 사안에서도 최고경영자가 나와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추가적 감경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경영자의 의사표시와 제도까지 병행되어야만 감경사유 중의 하나인 재발방지 조치가 도입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주)씨제이헬로비전은 (주)씨씨에스충북방송과 같이 전에도 한 번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은 (주)씨제이헬로비전이 M&A한지 얼마 안 됐지요? 언제이지요? 행위가 그 전과 그 이후가 다른 것입니까?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2014년 6월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주)씨제이헬로비전이 대주주로 된 이후에는 제대로 이행했다는 것이지요?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거기에 비하면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한 번 제재를 받았는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 김성욱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신뢰감의 문제입니다. 저는 최고경영자께서 와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한 것을 믿고 추가적 감경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사무처가 마련한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께서도 사무처에서 보고한 방안대로 하면 어떠실까요? (...) 부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저도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재허가 심의 과정에서도 PP사용료 지연지급이 문제가 되어서,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동안 대주주와 2대 주주의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적을 해서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새로이 CEO를 영입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영에 임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 방송사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시그널을 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래서 이번 시정명령에 보시면 중간점검이 들어갔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미지급·지연지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7년 1월 앞으로 향후 1년 이상 그렇게 전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매달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매달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업체들은 이렇게 하고, 동시에 저희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불 계획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다수 의견대로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의견이시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가적 조정을 할 때 원래 기준금액이 아니고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 30%의 경우에는 30% 가중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40%를 감정한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근거 조문이 무엇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고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2-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제7조입니다. 추가적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에 일부 고시에서 가중 상태에서 감경하는 것을 바로 잡아 고친 기억이 나는데,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고시는 안 고쳐진 모양이네요? 그 고시는 유효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시다.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분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2012-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1억원 미만 과징금 절사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10만원 단위로 절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이기훈 방송시장조사과 사무관

- <붙임> 별첨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의거해서 최종 과징금이 가장 낮은 사업자, 본 건에서는 하나방송입니다. 하나방송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만원 단위에서 절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방송의 경우에는 1억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사업자인 하나방송 기준에 따라 만원 단위에서 절사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만원 미만을 절사한 것입니까?

○ 이기훈 방송시장조사과 사무관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지금 논의한 것처럼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개선 등 시정명령을 하고,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과징금 1억 3,265만원, 그다음에 (주)씨제이헬로비전강원방송은 과징금 8,931만원, 하나방송 주식회사는

과징금 446만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경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2015-44-20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주)경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경기필이 신청한 (주)경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경기필이 신청한 (주)경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승인 신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 개요입니다. ‘15년 6월 8일 (주)경기필과 특수관계자 심○○은 (주)경기방송의 최다액출자자인 (주)호주건설의 경기방송 주식을 양수받아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전에는 (주)호주건설이 전체 주식의 39.82%를 가지고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주)경기필에게 29.82%, 심○○이 10%를 소유하게 됩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회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었고, 심사위원회는 ‘15년 8월 24일 월요일에 있었는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사항을 검토하고 신청인과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심사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무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과 사회적 신용 및 재무적 능력이 요구되는 방송사의 최다주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주)경기필의 경우 오직 경기방송 지분 매입을 위한 서류상 법인으로서 제출한 경영계획도 신뢰하기 어려워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할 책임 있는 소유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고, 특수관계자 심○○의 경우 과거 방송법을 위반하여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방안, 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의 제출 및 이행 등을 조건으로 하는 변경승인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경기방송에 대한 방심위 제재 사례가 없으며, 방송법상 소유지분 제한의 취지인 방송의 사유화를 우려할 만한 사례도 없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주)경기필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면 심○○이 경기방송을 소유함과 동시에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방송전문경영인 제도의 훼손이 우려됩니다. 둘째, 사회적 신용 관련, 특수관계자 심○○은 소유지분 초과와 허위서약서 제출 등 방송법령 위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송사 최다주주로서 보유해야 할 신뢰성과 신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재무적 능력과 관련, (주)경기필은 경기방송 주식 보유를 위한 서류상의 법인으로서 제출한 경영계획에 신뢰성이 없어, 방송사 최다주주로서 재무적 안정성과 영속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지역사회공헌과 관련, 서류상 법인인 (주)경기필

은 경기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활동 및 사회환원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실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섯째, (주)경기필이 제출한 경기방송 지배구조 관련 이행각서 내용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마친 후, 위원회 최종 의결을 앞두고 급박하게 제출된 것으로서, 과거에도 허위 약속서를 제출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행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 (주)경기필은 지상파방송사의 최대액출자자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신용·재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한 실적과 향후 계획이 부실하므로, (주)경기필이 신청한 경기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거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이 <불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들의 의견과 심사내용이 정리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다주주 변경이나 재허가를 심의해서 불허한 경우가 방통위 출범 이후 최초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다주주 경영계획서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다주주 변경 신청인에 대한 청문결과 ‘공적책임과 공공성 구현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심사시 판단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허위서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방송법상 ‘1인 소유지분 한도초과’ 이것을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반하지 않았다고 허위서약서를 제출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몇 년도 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4년도와 2007년도 두 번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2002년에도 차명계좌를 보유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 당시에 차명계좌를 보유하고서 본인이 최대액출자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승

인을 하고 있지 않다가 명목상 차명계좌를 포함해서 다시 늘어나니까 2004년도에 저희에게 신청해서 변경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2010년 경기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과거 방송법 위반사례까지 다 드러났던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고발했던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고발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고발 결과, 벌금 1,500만원 선고되어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물론 법적으로는 이것이 차명이 아니지만, 소유지분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행정적으로는 위반한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매각을 현 대주주인 호주건설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매각하고 한 달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서로 돈을 빌려줘서 채권·채무관계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이번에 최다주주로 신청했던 심○○씨, 당시의 최다주주였지요. 그분이 호주건설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고, 그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그 지분을 담보로 해서 30억원을 호주건설에 채권으로 준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에 다시 심○○ 씨가 최다주주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그 주식을 30억원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다시 받은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명계좌다, 차명했다, 입증은 못 하지만 당시에 저희들이 명령을 내렸던 법적인 소유지분 한도초과분에 대한 해소명령,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1대 주주의 지위를 내놔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최다주주로 신청했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보면 재허가, 최다주주 변경 심사 절차에 대해서 대단히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주신 최다주주 변경승인 불허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최다주주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경기필이 2008년부터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이고….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최근 3년 동안은 폐업상태에 있었다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위해서 다시 종업원이 1명도 없는 법인을 내세운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런 점은 허가를 해 주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면 (주)경기필이 페이퍼컴퍼니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저희가 보면 서류상의 회사로 보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경기방송의 2대 주주인 것 같습니다. 2대 주주에서 최다주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대주주는 호주건설이고, 호주건설 주식을....

○ 김재홍 상임위원

- 2대 주주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로서 2대 주주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차명계좌, 위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고,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최다액출자자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경기필 페이퍼컴퍼니를 우리가 어떻게 제재,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법적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기업이 방송사업에 진출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군다나 최다 주주를 노렸다면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심사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방송사업자, 다른 쪽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말하자면 악덕기업이 사회적 책무 공공성이 기본인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유사사례가 없는가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44-20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

획(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 및 인정 분야는 각각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인데 공익채널의 경우 위원회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분야」에 명시된 방송분야인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지원별로 채널을 선정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에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채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 및 인정 절차 관련하여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의결하면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신청사업자의 제출 서류 등을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여부, 조건부과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공익채널 심사위원회는 7인으로 장애인복지채널 심사위원회는 공익채널 심사위원 7인에 장애인분야 전문가 1인을 더하여 8인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방법 및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심사방법입니다. 심사위원회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심사항목별 「평가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은 '15년도 심사항목을 준용하되 사업계획 이행도 제고, 프로그램 제작능력 평가 강화 등을 위해 일부 심사항목 및 배점을 <붙임 1>과 같이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및 인정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채널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총점의 65%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선정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는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 예정으로 신청요령을 공지하게 되고, 신청서 접수는 금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는 금년 11월 중에 있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및 선정·인정서 교부는 마찬가지로 11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라. (주)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4-44-20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주)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주)LG유플러스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제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책정·시달하고 관련 유통점에서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사배경은 이동통신 3사의 20%요금할인제 가입에 대하여 금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LGU+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작년 10월까지 금년 6월 기간 중 LGU+의 신규·기기변경 및 20%요금할인제로의 전환 가입자, 그리고 본사와 대리점의 판매장려금, 마지막으로 가입 거부·회피 관련 대리점 및 고객센터 불만민원 등이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서는 판매장려금의 과소 지급입니다. LGU+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통채널별로 20%요금할인제에 대해서 판매장려금을 0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 수준으로 과소 시달함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20% 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회피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려금의 차감입니다. LGU+는 타사와는 달리 20%요금할인제의 유치조건에 보다 고가인 LTE요금제를 1년 이상 이용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지 못할 경우에 개통장려금을 제외한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유통채널들의 판매유인을 약화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리점의 판매점에 대한 장려금 미지급입니다. LGU+ 관련 22개 대리점의 판매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확인한 결과, 이 중에서 16개 대리점에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 또는 5월까지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가입을 사실상 거부·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요금할인제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내용으로 20%요금할인금액이 공시지원금보다 큰 단말기를 중심으로 조사착수 전 10,629개 대리점, 조사착수 후 548개의 대리점을 미스터리 쇼핑한 결과, 신규단말기는 20%요금할인제 가입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중도 해약 시 위약금이 단말기지원금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거짓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가입을 거부·회피한 사례가 11.7%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의 전제가 되는 정보제공을 부당하게 저해한 행위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조사대상기간 중 LGU+ 고객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66,285건이었으며, 그중에서 15,469건에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부성 민원은 예를 들어 현재 해당대리점에서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직영점 또는 고객센터로 방문 안내를 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며, 회피성 민원으로서 20%요금할인제를 안내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안내, 두 번째는 20%요금할인제 유불리 내용에 대한 안내를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 조사대상기간 중 총 가입자 330여만명 중에서 지원금제와 20%요금할인제에 대한 유불리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20%요금할인제 가입이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 중에서 98만여명이었고, 그러나 이 중에서 29,000여명, 즉 약 3%만이 20%요금할인제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요금할인제보다 단말기지원금제를 유치함으로써 더 높은 매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관련된 제재는 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먼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

하는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아울러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말기유통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제재방안으로서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참고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 제6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추가적인 시정명령이 가능하므로 그 조사결과를 미래부에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제1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말기유통법 제15조제3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따라 관련 매출액을 토대로 하되 총 22개 대리점 중에서 16개 점에서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축소 지급하여 가입을 거부·회피한 점, 두 번째로는 LTE요금제를 1년 이상 이용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지 못할 경우 유통채널들에게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판매유인을 악화시킨 점, 그리고 해당 고객센터의 가입 거부·회피성 민원이 약 1,5,000여건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의 전제인 정보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피해를 현저히 발생시킨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서 기준금액을 21억 2,000만원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위반사항이 첫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LGU+는 조사착수를 한 6월 31일 이전에 20%요금할인제에 대한 차별적 판매장려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매장려금 시달내역을 물론 확인은 하였으나 실제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는 조사를 착수한 이후인 금년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과징금은 기준금액의 가중·감경 없이 21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참고자료와 LGU+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대리점 쪽에서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시불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20% 약정할인이 금액 기준으로 보면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공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다음에 여기는 조사를 시작할 시점에 LGU+의 20% 약정할인 선택가입자가 전체 대상자 983,383명 가운데 3%인 29,01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동일한 기간에 타사의 20% 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타사의 가입자 비중은 LGU+에 거의 2배가 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혹시 수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지금 현재 수치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LGU+의 2배 이상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2배면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SKT 같은 경우에는 21%였고, KT는 17%, 1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결정적으로 이러한 20%약정할인 가입자의 비중이 3사 간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본사의 장려금 차감정책이 상당히 큰 요인을 차지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마지막 부분에 LGU+ 쪽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요금할인제 가입자 변화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3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8월 4일 기준으로 보면 LGU+의 20%요금할인제 가입자가 11%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사 간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렇지만 아직 차이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22%, KT 같은 경우에도 1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SKT나 KT는 기존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다만 LGU+는 3%에서 11%까지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조금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20%요금할인제와 지원금 둘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20%요금할인제는 지난번에 미래부가 주도해서 12%였던 것을 20%로 상향조정한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아주 급격한 상승이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방통위로 하여금 지원금 상한액 30만원을 33만원까지로 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압력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용요금 할인을 20%와 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이 이용자에게는 동등한 혜택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통사 사업자들이 미래부의 과도한 이용률 향상 조치에 반발하고 지원금 제도 쪽으로 지지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한선을 33만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요금할인제에 가입할 경우에 유리한 가입자가 어떤 경우이지요? 고가요금제 가입자입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공시지원금이 높게 되면 지원금이 유리하고, 공시지원금이 10만원대로 낮춰진 경우에는 20%요금할인제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비교는 공시지원금과 20%요금할인을 받는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이 작게 되면 요금할인이 유리하고, 공시지원금이 많게 되면 공시지원금이 유리하게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본인이 선택하는 이용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요금제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요금제에서도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요금할인이 크게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요금할인제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매우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자가 특정 방향으로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지원금과 결합된 요금상품들은 보통 고가요금제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ARPU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할인보다는 지원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자신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선택권을 혼란시키고, 사업자들에게 이기적인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의 마

케팅은 우리가 인정하고 허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말하자면 이용자들의 소비선택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보장해 주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보고한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 방안에 다 동의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방통위가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출범한지도 오래 됐고, 그래서 조사·제재 업무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이용자보호, 공정경쟁 등 대원칙, 큰 명분, 매크로한 정책방향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제재에 있어서는 좀 더 정교한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5페이지에 보면 미스터리 쇼핑이 있지 않습니까? ‘20%요금할인제 가입 거부 회피 행위’ 이것이 지적한 대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LGU+인 경우에 20%요금할인제에 가입한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래서 결국 이런 이용자에 대한 유리한 이 요금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혐의점을 두고 시작을 했다면 혹시 SKT나 KT에 대해서도 이런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서 확인하면 거부, 회피건수는 적을지 몰라도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 좀 더 디테일한 어프로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록 20%요금할인제 가입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 LGU+처럼 본격적인 조사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한 번 스팟 체크를 해서 이런 행위가 어떤 사업자들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6페이지 참고표시에 보면, LGU+가 제출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20%요금할인제가 유리한 가입자 현황이 나오고 밑에 보면 이 자료가 작년 말과 금년 상반기까지 월별 수치입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월별 수치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주 미미하다가 3월, 4월, 5월, 6월 이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래서 6월에는 6.3% 이렇게 되는데 10페이지에 보면 ‘LGU+의 20%요금할인제 가입자 변화추이’ 이렇게 되

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6월은 6.3%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5월 31일 8.5%, 6월 30일 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치가 앞에 것과 어떻게 됩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차이가 있는 것은 20%요금할인이 유리한 가입자 중에서의 비율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 외에 불리하더라도 20%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LGU+의 전체 20%요금할인 가입자 추이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국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LGU+는 6월 1일부터 차별적 판매장려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의미 있는 20%요금할인제 가입자 변화는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워딩이 되어 있는 것 보다는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던데, 20%요금할인제 가입자 변화가 의미가 있다, 없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의미 있는 것이고, 사무처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하면 위법·불법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냐, 이 표현에 의해서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타 사업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20%요금할인제 가입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가입 회피하는 마케팅에 대한 민원도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혐의를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긴 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지, 여기에서 8.5%, 9.4%, 10.9% 11%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의미 있는 변화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시행이 말단 대리점까지 시달 된 것은 7월부터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7월 31일은 10.9%인데 8월 4일 11%라고 하면 또 여기에서도 대전제에 따라 가입 회피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고 제가 하고자하는 코멘트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실태점검이든 아니면 사실조사를 하기 이전에도 평소에는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것은 제재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스터리 쇼핑만 하더라도 조사착수 이전에도 계속 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가입자 변동에 있어서 통계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는 저희들이 330만명을 조사한 것은 개통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더 낮고, 그다음에 전체에서 그것이 8, 9%냐, 10% 넘어가느냐 문제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가입자가 순수하게 지원금제, 소위 말하는 전환가입자가 있습니다. 그 비율까지 포함하면 10%를 넘어가느냐, 안 넘

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백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는 합시다만 예를 들어서 타 경쟁사와의 비율의 문제, 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자리수인 것과 또는 두 자리에 있는 것의 차이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LGU+ 측에서 아까 10쪽에 나온 것은 가중·감경사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착수 전 또는 후에 시정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중·감경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LGU+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판매장려금 시달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말기 지원금과 20%요금할인제에 대한 차별은 해소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소됐으면 위법행위는 해소가 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때 ‘해소’라는 것은 문서상으로, 보통 본사에서 소위 말해 ‘정책’이라고 합시다만 전국에 있는 유통채널에 정책을 시달하는데 그것은 기록은 있으나….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 의미라면 ‘이렇게 해소됐다고 주장은 하나 우리가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7월 이후에 그것이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지 않습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같은 표현인데 그것을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간단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과 저도 동일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뒤에 제재의 수위를 결정할 때 ‘위반행위가 중단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시달이라도 중단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 착수 시점에 LGU+의 20%요금할인제 가입자 비중이 전체 가입자에서 3%입니다. 그렇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98만명 유리한 사람 중에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개통 기준으로 98만명….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LGU+ 전체 20%요금할인제 가입자 변화 추이를 보면 우리가 조사착수 전과 그다음에 8월 4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한 달 상간인데 8%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8%의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유리한 샘플 98만명 중 3%이고, LGU+의 추이는 기존에도 6%, 7%를 유지했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은 전환가입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가입자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낮았던 20%요금할인제 가입자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왜 늘어났느냐?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이 중단된 것이고, 그다음에 장려금 차감 정책이 중단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20%요금할인제 가입자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물론 정도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적극적인 안내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거짓안내입니다. 15,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사례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전체 330만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실제 저희들이 요금제와 가입형태를 분석해 보면 약 98만명, 100만명이라고 본다면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 10% 내외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보제공을 했다면 사실상

30%까지는 됐어야 하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2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시점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것이고, 지금 LGU+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중단함으로써 가입자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것과 무관하게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자의 규모를, 비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암묵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경영 전략에 따라 20%요금할인제 가입자 비중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명령 내리는 것을 보면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9페이지를 보면 ‘고객센터의 가입 거부·회피성 민원이 15,409건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위법행위 중단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거부·회피성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해결하도록 실무지도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공시지원금과 20%요금할인에 대해서 대리점 같은데 갔을 때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표>들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그런 것들을 내려 보내서 현장점검도 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20%요금할인 금액을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제도개선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민원인 15,409건의 경우 경제적인 손해를 본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것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습니까? 이용자 피해구제는 우리가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것을 고려해서...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래서 '중대한 위반'으로 적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도 반영시킨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 점까지 고려를 한 것입니다.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그래서 '중대한 위반'으로 잡았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SK텔링크 알뜰폰 제재도 이용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피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용자 피해구제 정도를 보고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로 민원 해결을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처가 의견을 내실 것입니까?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저희가 시정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LGU+를 통해서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시정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추후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의결하면 보장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SK텔링크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또는 손실을 특정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면 이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의 성격들을 분류해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챙겨봐 주십시오.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LGU+를 대상으로 해서 20%요금할인제와 관련된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다른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도 일부 위반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시정조치가 나가더라도 향후에 또 장려금을 차별한다든지,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일이 또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용자정책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들에게 이것이 한 번의 제재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서 LGU+뿐만 아니고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없도록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 의견으로는 이동통신사도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나는 데에는 장려금을 더 주고, 수익이 덜 나는 데는 장려금을 더 줄여 주는 것을 저희들이 위반행위가 있다, 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LGU+의 경우에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이 더 나고, 덜 나고, 그래서 장려금에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안전에 설명되어 있듯이 아예 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5만원 미만의 극히 적은 장려금을 지급해서 그런 적정한 차이가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20%요금할인은 유치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나 적게 나나 같은 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냐?’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것에 비례해서 적절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건의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거나 또는 5만원 미만을 지급한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이라는 뜻이 분명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과징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피해회복 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사건들이 15,000여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경우는 지원금과 20%요금할인이 숫자상으로는 어느 것이 하다못해 몇 천원이라도 더 많다, 적다라는 것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성향에 따

라서 비록 차이가 나더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요금을 나누어서 20% 할인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금 액수와 20% 약정 기간 동안 할인액을 단순비교해서 그 차액이 무조건 손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맡겨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가중·감경에 있어서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인해서 LGU+가 일부 위반행위는 시정을 했지만 위반행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말끔하게 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사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는 없으신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워딩이 요금할인제 가입률이 늘면 위법이 없는 것이고, 적으면 위법하다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반행위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위반으로 봐서 2%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서 21억 2,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SK텔레콤 건도 그렇고 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위반이나 다른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발생시 보상 내지 피해구제 문제가 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정책국의 이용자보호과에서 지난번에 SK텔레콤건을 보고 할 때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공정위의 소비자원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 분야별 피해보상 또는 피해구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것, 정책적인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방송서비스 특히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방통위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케이스별로 생길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한 논의이긴 하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용자정책국에서 그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입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이기주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적은 저희가 지난 SK텔링크 제재할 때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이용자 피해를 회복시키라는 명령 이런 것들, 사실은 그것에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회복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이기주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하신 것도 물론 맞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SK텔링크 할 때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시간이 걸립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이기주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SK텔링크 건, 이 건 이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면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제재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자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와 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잘 부탁드립니다.

7. 보고사항

가. SK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SK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배경은 SK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신규모집금지 7일에 대한 시행시기를 최종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를 지난 3월 26일 SKT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7일’을 부과하되, 그 시행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난 6월 초에 SKT의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방안에 대하여 “메르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논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으로 먼저 최근 일평균 가입자 수는 월 약 58,000여명 수준으로서 최근에 들어서는 큰 변동폭이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평균 번호이동은 약 15,000명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력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평균은 약 21만 5,000원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지원금 상한액의 6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단말기 출시와 관련해서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0일, LG전자는 10월 중순, 그다음에 애플은 10월 중순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시장전망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매년 추석 연후를 전후해서 이동통신 마케팅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시기(안)로서는 SKT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신규모집금지는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 안건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수 의사로 중의로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느 특정기업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회의 의결과 직무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26일에 의결해 놓고 6개월도 넘어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도 이런 판결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 결정은 더군다나 더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5달 넘게 우리 내부에서 여러 불필요한 논란도 있었고 정말 소모였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이 1건 가지고 몇 차례 논란이 벌어진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결해 놓고 제재 이행을 조정한 예는 없는 것은 아니지요. 2013년 이통3사 영업정지를 다 결정하고 2014년도에 시기를 나누어서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통3사 모두가 다 걸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면 시장이 동결된다, 또 이용자의 편익이 침해받는다, 또 전국의 판매·유통점 종사자들도 민생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국민 편의 관점에서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사업자 시장상황, 저는 시장상황 전체를 얼어붙게 한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 SKT가 비록 시장점유율이 50% 가까이 되지만 2위, 3위 사업자가 또 있어서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클지 모르지만 동결시킨 것은 아니었고, 또 국민 이용자 편익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자, 즉 제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의 이익을 주된 이유로 해서 이렇게 지연시켜서 6개월이나 표류하고 이제야 결정이 되는 것은,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까? 방송통신 위원으로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시장상황, 경기진작, 경제진흥에 장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봐서 하자, 저는 그것은 매우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시장의 질서와 규범이 지켜지고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늦췄다가 시장질서와 규범이 해이해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시장경쟁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구지만 내각의 일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각의 경제정책에 흔들리고 좌우되고 일희일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제발전 정책은 저는 매우 손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은 단기적으로 경기진흥정책, 시장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독립된 기구로서 방통위 같은 기구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직무, 우리의 첫째 본령, 규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무시됐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이 건이 선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나쁜 선례가, 잘못된 선례가 관행화되고 이다음에 또 의결해 놓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나중에 이행하자? 이런 선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된 규제기구로서 대통령의 직속기구이고 내각의 일원이 아니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만 국무회의 정기 멤버가 아니고 배석자입니다. 내각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시장정책, 경기진흥정책에 좌우되어서도 안 되고 끌려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독립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그렇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무너진 점이 정말 가슴 아프고 그동안에 정말 불필요한 소모적인 비판, 비난도 받아왔고 의구심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이 절대 앞으로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시장상황을 봐서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면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이내에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월 말 이내로, 그런데 아까 중간에 있었지만 5월 말을 넘겨서 6월에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6월이 반드시 하한기여서 시장거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오해받기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6, 7, 8월이 하한기니까 그렇게 봐 주는구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6, 7, 8월이 지나서 시장거래가 정상화될 때 하려면 9월 초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 전에, 이미 9월 첫 주는 지나가고 있지만 추석 전에 2개 주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도 넘겨서 10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시 한 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저는 다수결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불필요한 논란, 소모를 거치면서까지 토의를 해서 중의로 모아졌기 때문에 의결은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시장의 플레이어가 저희는 지금 제재대상이 이동통신사업자뿐이지만, 과거와 달리 아주 복잡한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

통망이라고 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관계를 맺은 유통망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상당한 섹터가 되어 있고, 또 단말기를 포함해서 다른 이동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군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이 크게 보면 플레이어가 4명 같지만, 우리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비단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나 단말기유통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제재를 결정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통위가 특수한 정부기구로 되어 있지만 저는 분명히 방통위도 대한민국 행정부 경제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제장관회의, 제가 경제차관회의에 가기도 하고, 또 사회부처 장관회의도 가고 여러 회의에 가지만 저희는 분명히 경제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저희도 최소한 견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때는 단통법 시행 5개월, 6개월 시점입니까? 새로운 단말기유통법 체제하에 아직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제재조치를 하면 최소한의 행정 소요일수를 제외하고는 바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든 규제든 최소한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결정은 먼저하고 집행은 뒤에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한 달 내, 두 달 내에 집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셨는데 그 한 달, 두 달은 저는 정해진 룰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5월에는 논의를 하든 집행을 하든 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3월에 결정할 때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5월 말에 김재홍 위원님이 공교롭게도 중국 출장을 가셨고, 티타임 때 고삼석 위원님이 대신 그 의제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께서 ‘김 위원님 오시거든 6월 초에 논의를 하자’고 해서 6월에 논의를... 저 개인적으로는 6월에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또 불행히도 메르스라는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큰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홍 위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처음부터 무작정 뒤로 딜레이 시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3월 초에 여러 가지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이 불안정하고 걱정하는 소리도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했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저도 결론적으로 이런 제재를 결정해 놓고 집행을 나중에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기를 바라고, 단지 방통위는 아무리 대원칙, 기본,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과거 회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소한 정책의 유연성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개인적으로 김재홍 위원님 지적에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큰 공감을 표합니다.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메르스사태 라는 비상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제재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미루어 왔는데, 국민이나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숨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재의 실효성과 집행의 적시성 이러한 것들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사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보고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이 건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시다만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이통사에 대한 과다지원금 지급에 대한 첫 우리가 영업정지 처벌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가 언제든지 위원회가 여러 가지 우리 국가 경제 상황을 보고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논의한 바로는 ‘일단 메르스사태라고 하는 국가적인 초비상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다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235억원 가까이 이르는 과징금을 같이 병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과징금으로서 실질적인 처벌을 했고, 거기에 또 병행해서 일주일간 영업정지라고 하는 것을 병과했는데 영업정지라고 하는 영업정지를 하는 것, 일주일간 신규 모집도 못 하고 기기변경도 할 수 없는, 번호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신규와 번호이동….

○ 허원제 부위원장

- 기변은 가능하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 처벌 자체가 일주일 동안 영업을 못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엄청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처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하는, 견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를 가지고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상식적인 판단, 우리 국가 경제, 경영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동안에 잘 어느 정도 작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토의할 부분도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는 국가기구입니다. 그러나 내각의 일원은 아닙니다. 내각의 경제팀의 일원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경제정책을 쓰는 경제팀이 있지만 우리는 국가기구로서 좀 더 중·장기적인, 또 경제팀도 아니지요. 사회경제기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령적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가기구의 역할분담과 분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다르게 모아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 안보기구가 반드시 북한이 아니라 다른 외국과 외교와 교류를 강조한 다거나 통일외교부가 국방부나 군사부서처럼 계속 무력증강이나 대결주의를 고양한다는 것은 역할 분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규제기구는 규제기구로서 본령적인 직무를 다 해서 국가 발전에 도모,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부도 아니고 기획재정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률적인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내각의 경제 운영에 아닌 말로 도구가 된다면 이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이 기구의 정체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점은 토의를 넘어서서 말할 필요도 없는 방통위의 존재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원칙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지요. 의결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도 길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한 주, 두 주 조정할 것 하고 그리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제재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길어야 두 달 이야기한 것도 어폐가 있는데 한 달, 두 달 기준이 뭐냐? 기준이 없지요. 판결을 내렸으면 며칠 이내에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5월 말 이전에는 늦어도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메르스는 6월 중·하순 이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6, 7, 8월이 지났으면 9월 초순에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석 전 이것도 피해서 9월 다 지나서 10월 첫 주에 하는 것도 정상적인 결정이나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아주 이례적인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층이 보기에 방통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특정 대기업을 봐 주는 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경제정책에 좌우되는가? 흔들리는가? 과연 독립적인 기구인가? 많은 의구심을 그동안에 표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토론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만 하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몇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중 상당 부분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월 26일 저희가 의결을 할 때 바로 신규모집금지를 집행하면 아마 4월 초에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어서 이것을 뒤로 미루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여러 고려요인 중 극히 작은 일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부분은 그 당시에는 단말기유통법이 과연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걱정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상황에서 유통점이나 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가 됐고, 만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저희가 봐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신규모집금지를 차라리 부과하지 않고 과징금 정도로 또는 과징금을 높이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월 초에 논의를 해서, 사실은 이것이 논의하고 바로 기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고지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논의하려는 순간에, 바로 6월 중순부터 메르스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규모집금지 7일은 SKT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SKT에 대해서 제재효과를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써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의결한 다음에 일정한 고지기간 이후에 바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SKT에게 동일한 제재효과를 주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다른 시기에 집행이 된다고 해서 그리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 메르스 사태가 안정이 된 7월 말이나 8월에도 얼마든지 SKT에 대해서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었습시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4월 초와 상황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SKT에게 소위 말하는 여름 하한기이기 때문에 더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는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반대로 4월 초보다는 오히려 추석 전에 한다는 것은 SKT에게 신규모집금지 7일에 대한 더 불이익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4월 초에 했을 때와 유사한 정도의 제재효과를 줄 수 있는 때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쪽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9월 9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0분 폐회 】